

#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800호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발의일자 : 2015년 10월 30일
- 라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4일

## 2. 제안이유
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, 「청소년보호법」 제5조제1항,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 및 마약류, 치료보호, 유해약물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조~2조)
-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역할, 지원사업의 종류,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3조~4조)
- 전문기관 지정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5조)
-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지도·감독 관한 사항 명시(안 제6조~7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,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5조제1항, 제2항

나. 예산조치 : 2015년 60백만원 예산 편성(보건의료정책과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신설·강화 규제사무 없음
- (2) 조직담당관(위원회) : 해당 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해당사항 없음(미첨부사유서 별첨)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원안 동의
- (5) 갈등조정담당관 : 갈등사항 없음
- (6) 여성가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원안 동의

## 5. 검토의견

### 1) 제안 배경 및 개요

-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, 마약류 및 유해약물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

### 2) 세부사항별 검토결과

#### □ 안 제1조(목적)

- “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상담, 치료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”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
  - 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이 사회의 안전과 국민건강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

#### □ 안 제3조(시장의 책무)

- ‘시장은 시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,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등 필요

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’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,

- 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임과 이를 위해 수행해야하는 사업 등에 대해 항별로 명시하고 있음

#### □ 안 제4조, 제5조(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관련)

- 안 제4조에서 “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(제1항)” 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의료기관 보조금 지급과 제3~5호와 관련하여서는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,
  - 이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근거한 안 제5조제1호 ‘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사업’ 을 제외하고는 상위법에는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으로, 본 조례를 통하여 예산지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임